

29차 CODEX 식품표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보고 (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윤 선 경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1. 서 언

식품표시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이하 CCFL)은 국가간 식품표시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식품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가간 교역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또한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등 각국의 표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회의는 제29차 회의로서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표시, 유기식품표시, 건강 강조표시(유용성표시) 등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이 논의되어, 회의참석 당시 논의방향과 최종보고서(ALINROM

01/22A)를 참고로 하여 주요의제 논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9차 회의는 캐나다 정부의 주재로 2001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50개국 및 국제기구 39개 총 299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의제로는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응용식품의 표시,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표시에 관한 지침서, 건강강조표시 관련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표시에 관한 지침서 등이 있다. 의제목록은 다음과 같다.

○ 회의의제

의제	관련문서명	
의제 1	의제 채택	CX/FL 00/1
의제 2	총회 및 타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들	CX/FL 01/2, CRD 7, CRD 14
의제 3	코덱스 규격 중 표시규정 검토	CX/FL 01/3, CRD 15
의제 4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개정 초안	CL 2000/43-FL, CX/FL 01/05 Corrigendum, CRD 17, CRD 27
의제 5(a)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용용식품의 표 시에 관한 권고안(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 격 개정안) a) 정의	ALINORM 01/22, Appendix V, CX/FL 01/6, CX/FL 01/6-Add.1, CRD 8, CRD 30, CRD 42
의제 5(b)	b) 의무표시사항	CX/FL 01/7, CX/FL 01/7-Add.1, CRD 5, CRD 9, CRD 34, CRD 35, CRD 43, CRD 45, CRD 46
의제 6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분류명)	ALINORM 01/22, Appendix VI, CX/FL 01/8, CX/FL 01/8-Add. 1, CRD 6, CRD 18, CRD 25
의제 7	영양표시지침서에 관한 개정 초안(영양소 목록)	ALINORM 01/22, Appendix VII, CX/FL 01/9, CRD 3, CRD 24, CRD 31, CRD 37
의제 8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권고 초안	CL 2000/43-FL, CX/FL 01/05 Corrigendum, CRD 17, CRD 27
의제 9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 성 분함량표시	CI 2000/35-FL, CX/FL 01/11, CRD 2, CRD 11, CRD 20, CRD 33, CRD 38
의제 10	원산지표시관련 토론보고서	CX/FL 01/12, CRD 4, CRD 21, CRD 28, CRD 41
의제 11	기타사업, 앞으로의 작업과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CX/FL 01/13

2. 다른 분과에서 제기한 사항

(1) 분석 및 시료채취 분과위원회(Committee on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CCMAS) 관련

CCMAS는 CCFL에서 요청한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된 식품의 분석방법 마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 분야 관련 국제기구의 연구상황을 고려하여 동식품의 검출 및 확인을 위한 분석방법에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CCMAS의 의장(헝가리의 Biacs 교수)은 생명공학기술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Intergovernmental Ad Hoc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에서 제안한 의견을 포함하여, 당 분과에서 요청한대로 내년도 CCMAS 회의(2002년 11월)에서 생명공학기술식품의 분석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2) 천연광천수 분과위원회(Committee on Natural Mineral Waters, CCNMW) 관련

CCFL은 불소함량에 대한 CCNMW의 요청을 보고하고 영양적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이 문제는 CCNFDUS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합의하고, 후에 필요시 CCFL도 표시시행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였다.

영유아식 조리시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CCFL은 CCNFSDU가 현재 조제유에 대한 규격(Standard for Infant Formula)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그 규격개정시에 사용방법에 관한 정보(Information for Use) 관련 section을 신설하도록 하여 CCNMW에

서 제기한 사항을 다루기로 하였다.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특히 물의 사용 및 오염의 측면에서 영어의 급식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CCFL는 조제유에 대한 규격 개정 시에 이같은 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오염물질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특히 물과 영어용조제유중의 납성분에 대하여, 코덱스사무국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서 영어용조제유를 포함하여(0.02mg/kg) 식품중의 납의 최대허용기준을 8단계로 상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CCFL은 천연광천수 이외의 병/포장식수에 대한 규격(안) (Draft Standard for Bottled/Packaged Waters Other than Natural Mineral Waters)에 보면 모든 포장된 식수제품은 최근에 WHO에서 발표한 “식수의 품질지침(Guidelines for Drinking Water Quality)”의 전장관련 규제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3) 생명공학기술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 회의 논의결과

CCFL은 생명공학기술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 회의(2001년 3월, 일본, 치바)결과 생명공학기술용식품의 위해분석에 대한 일반원칙(초안)(Proposed Draft Principles for the Risk Analysis of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과 재조합 DNA 식물로 제조한 식품의 안전성 평가시행에 대한 지침(초안)(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 of Foods Derived from Recombinant-DNA Plants)을 5단계로 상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동 특별작업반회의에서 개념상 서로 일관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정의한대로 “modern biotechn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특별작업반회의에서 이른바 “GM” 식품에 대한 정의를 “modern biotechnology”로 정의함에 따라, 현재 CCFL에서 작업중인 “유전자재조합/변형 식품 표시규정”에서는 “GM” 식품을 이미 “genetically modified/engineering”으로 정의한 것과(2000년 5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비록 일부 국가와 참관인들이 식품표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하지만, CCFL에서도 관련 작업시에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동 특별작업반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하였고 CCMAS에서 이러한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CCMAS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CCFL에 이러한 진행상황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동 특별작업단에서 Traceability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유기농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 등 여러 가지의 CCFL 작업분야에서 식품유통 전 과정을 통해 traceability의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CCFL은 코덱스사무국에서 작성한 문서에 근거하여, 수출입 및 인증분과 위원회(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CCFICS)가 동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분과위원회에 지침을 제시하고 코덱스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traceability를 검토할 것을 총회에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CFL는 CCFL에서 traceability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많은 국가와 일부 참관인은 traceability는 CCFL의 작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CCFL도 장래에 traceability 검토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총회에 밝힐 것을 제안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최근의 일반원칙 분과 위원회(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CCGP)에서 traceability를 논의한 결과 CCGP는 동 건에 대하여 총회의 지침을 받고자 하며 전체 코덱스 시스템에서 traceability의 접근방식에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CCGP가 역할을 해야 하겠으며, 향후 동 건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고(ALINORM 01/33A, para 15) 설명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동 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것이므로 총회가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방침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시하기 전에 CCFL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단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CCFL는 총회와 각 Codex 분과위원회에 향후 CCFL도 traceability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3.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 응용식품의 표시 관련

유전자변형관련식품의 표시에 대하여 당초에는 기준에 존재하는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의 section 2(정의, Definition of Terms), section 4.2.2(알러지 의무표시, Allergen), section 5(부가적강제의무표시사항, Additional Mandatory Labelling)에 관련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추진하였다.

이중 section 4.2.2는 합의에 도달해 28차 회의(2000년 5월)에서 8단계로 상정한 바 있고, section 2는 28차 회의의 토론을 거쳐 6단계까지 진척되었는데 내용은 유전자변형/유전공학(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 등의 정의 부분으로서 제28차 회의에서 Modern Biotechn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section 5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1)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가 기존의 식품과 같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방법, 2) 유전자 기술로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존재하는 경우와 기존식품과 다른 경우에 그 생산방법을 표시하고,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표시하는 방법 3) 모든 유전자변형 유래식품에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3단계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한편, 제28차 회의에서 일본은 유전자변형식품표시에 대한 규정을 포장식품의 표시규정과 별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동조발언을 함께 따라 현재 작

업되는 정의와 표시규정부분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침안(유전자변형/유전공학 특정기술응용 식품 및 식품성분의 표시에 대한 지침서 초안)을 작성하여 3단계에서 논의추진하기로 하였다.

23차 총회에서 유전자변형/유전공학 등 특정기술응용식품 표시규정(안) 중 정의(Definitions) (안)을 5단계로 채택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의(Definitions)

브라질의 지지를 받아 아르헨티나는 Cartegena Protocol의 정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 회의’의 합의안과 모순이 없도록, 현 정의(안)의 용어(GM/GE)를 “생명공학응용식품(modern biotechnology)”의 정의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의제의 토론을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안)(현재 6단계)과 정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현재 3단계)의 단계진행을 똑같이(3단계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의장은 본 정의(안)은 이미 1999년 총회에서 5단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CCFL에서 그러한 결정을 바꿀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노르웨이는 코덱스내에서 작업상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식품표시의 목적에 맞고 실제로 표시에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결과를 보면 식품에 관하여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이라

는 용어가 “modern biotechnology”보다 30배나 더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Genetic modification쪽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인디아는 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현 정의규정중의 해당내용을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원료와 그 기술로부터 얻은 가공품(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food ingredients and products derived therefrom)”이란 말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CCFL은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의 정의부분을 그대로 둘것인지 아니면 “modern biotechnology”의 정의로 바꿀것인지 논의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코덱스내에서나 Cartagena Protocol와의 관계에서 작업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modern biotechnology”을 지지하였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많은 국가와 참관인들은 표시규정의 목적에 맞게 설정된 현 정의부분을 그대로 두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 용어는 전세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제정한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될수 있는 용어를 찾기란 어려운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Cartagena Protocol에서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체(living modified organisms)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 정의안에서 현재 사용되는 용어는 Cartagena Protocol에 위배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아일랜드는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을 “modern biotechnology”

로 바꾸게 되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것이므로 혼란을 그대로 둘 것을 권고하였다. Consumers International은 자체의 전세계 회원들의 협의체에 따르면 “genetic modification/genetic engineering”라는 용어는 허용될수 있으나 “modern biotechnology”는 허용되지 않는 용어라고 설명하였다. 인디아 및 나이지리아는 아일랜드와 CI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RAFI의 지지를 받아 IFOAM는 ‘유기농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대한 지침서’에 있는 genetically engineered/modified organisms의 정의와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유기농식품의 규정에 위배될수 있는 새로운 정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Codex 사무국에서는 그 지침서는 이미 채택된 것으로서 적용범위가 다른 규격의 작업 결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지 않는 것이라 해명하고, 그 지침서에 있는 정의는 “유기(organic)” 강조표시를 정의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문서는 일반적인 표시사항에 대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적용범위(Scope)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있도록 “obtained from certain techniques”이라는 부분을 “derived from certain techniques”로 바꿀 것을 요청하고, CCFL는 스페인어판의 해당부분을 “obtained through/derived from”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CCFL은 “no longer equivalent/differs significantly”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말레이시아는 이 용어 모두 수용할 수 있으므로 square brackets을 삭제하고 혼란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이 문서 전체의 용어의 통일의 위해서 “technologies”을 “techniques”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많은 국가가 “no longer equivalent”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디아는 “not equivalent”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하였는데, 이 용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한편 다른 국가는 equivalence란 개념이 확실히 정의되지 않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다 정확한 용어인 “differs significantly”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네델란드의 제안에 따라서, CCFL은 이 용어의 정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 정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며, 다만 section 3.1(표시규정)과 6.1(표시시행)에서 이 용어의 사용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CCFL는 캐나다가 제출한 절충안을 검토하였고, 작업단(캐나다, 말레시아, 멕시코, 세네갈, 스웨덴, 미국, Consumers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ouncil of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s)에서 검토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즉 현 정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구를 명확히 하고, 현재 CCFL에서 검토하는 정의에 대하여 회원국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modern biotechnology”的 정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하여, IBFAN의 지지를 받아 인디아는 modern biotechnology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정의를 삽입해서는 않되며, 지난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본 정의(안)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디아

의 지지를 받아 IFOAM은 용어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modern biotechnology”를 각주로 달아 추가해야 할 것이며 절대 표시시행에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IBFAN도 이를 지지하였으며 표시를 “modern biotechnology”로 하게 되면 진보된 좋은 개념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이지리아는 “modern biotechnology”는 이를 허용하는 국가의 자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특히 중간산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저해효과를 염두해서 표지에는 유전자변형의 과정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본 합의안을 반대하였다. 이에 CCFL는 지침서초안에 section 6에서 표시방법에 대한 많은 예가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국가와 참관인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고 표시시행규정은 의제 5b에서 검토할 것이므로 본 합의안에 찬성하였고, CCFL는 합의된 정의(안)을 8단계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일단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하겠으며 총회전에 검토하겠다는 유보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다시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므로 본 합의안에 유보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좀더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서 되돌려 내년에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전

체 지침서중에서 정의부분만을 따로 작업하게 되면 CCFL의 작업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본 회의에서 추가된 Modern biotechnology 정의는 다음과 같다.

“Modern biotechnology” means the application of:

- a. In vitro nucleic acid techniques, including recombinant deoxyribonucleic acid(DNA) and direct injection of nucleic acid into cells or organelles, or
- b. Fusion of cells beyond the taxonomic family,

that overcome natural physiological, reproductive or recombination barriers and that are not techniques used in traditional breeding and selection

(2) 유전자변형/유전공학등 특정기술 용용식품의 표시에 대한 권고안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

CCFL는 지난 회의에서 캐나다가 주재하는 작업단에서 국가의견과 토론을 통해 제안된 여러 가지 표시시행방법 (labelling options)을 합치는 방식으로 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업단의 의장(Mr Gerry Reasbeck, 캐나다)은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업단이 2차례 소집되었음을 CCFL에 보고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친후에, 작업단은 지침서의 형태로 안을 작성하여 포괄표시(comprehensive labelling)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표시시행방법을 허용하며 각 표시방법마다 표시규정의 지침

을 제시하였다. 본 지침서는 CX/FL 01/7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Annex 2로 첨부되어 있고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에 대한 토론보고서도 Attachment A로 첨부하였다.

1) 일반적 의견

아르헨티나는 코덱스와 ‘코덱스 의사 결정 시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범위 원칙(Statements of Principle on the Role of Science and the Extent to which Other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s)’의 기본목적을 되새기며,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본 문서 전체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표시하였다. 또한 생산방식에 따라서 식품에 표시하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결정이라 주장하고, 최근의 CCGP에서 과학적 근거이외의 기타 합법적인 요소 (other factor)에 대해서는 다른 다국간의 토론의 권고사항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리며, 본 문서에 대해 향후 어떤 작업도 진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WTO에서 이전에 합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언급하였다. 코덱스 사무국에서는 CCGP는 과학의 역할과 위해분석과 관련한 기타 합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여러가지 ‘기타 요소로 고려될수 있는 기준(Criteria for the Consideration of Other Factors)’에 대해 제안하였으나, ‘다국정부간 기구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of relevant multilater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해서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square brackets으로 하여 해당 문서를 총회에 상정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코덱스사무국에서는 생명공학기술로 생산된 식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식품에 대한 표시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CCFL의 업무분장이나 코덱스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 지침서(안)에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규제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의 표시방법이 동등하게 나열된 것을 문제삼으며, 이런 방식은 코덱스내에서 일상적인 작업형태가 아니며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들은 코덱스는 국제적인 조화에 기본이 되도록 모든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2) 목 적

CCFL는 본 지침서의 목적은 표시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to provide guidelines to ensure)”이라 합의하고 이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다.

CCFL는 “특정기술로부터 얻은”에 해당하는 용어인 “obtained through”를 “derived from”으로 바꾸자는 제안과 목적과 문서제목에 맞게 “certain techniques”를 “techniques”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알리며, 토론을 거친후에, CCFL는 최종합의안이 도출된 정의(안)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몇몇 국가는 표시의 정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와 강조

표시에 대응할 방법이 없으므로 “입증 할수 있는(verifiable)” 정보라는 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면 소비자에게 제시할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으로 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유도하는(facilitating consumer choice)”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유는 이 문구는 불필요한 것이며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 설명하였다. 이에 다른 국가에서는 식품표시의 전체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본 지침서의 목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아서 아르헨티나는 ‘코덱스 의사결정시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범위 원칙’의 두 번째 문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식품표시의 정보는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무역의 공정한 관행을 촉진하는데 적절해야(relevant for consumer health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fair practices in foods trade)”한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국가는 식품표시의 목적은 건강에 대한 염려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CCFL는 절충안으로서 Consumers International이 제안한대로 표시에 대한 세 번째 원칙(규정집 참조, 표시규정은 코덱스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 맞게 규정하기로 하였다.

CCFL는 위와 같은 개정사항을 포함

하여 첫 번째 문단을 개정하여 square bracket으로 묶고 더 검토하기로 하였다.(Appendix V) 인디아는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CCFL은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였다.

3) section 1(적용범위)

아르헨티나는 CCGP가 제안한대로 코덱스의 규격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않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디아는 “유전자변형식품과 식품원료 및 그러한 방법으로 얻은 가공품 (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food ingredients and products derived therefrom)”에 대해 언급하며 이 문구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가 아니며, 동 지침서가 모든 사례에 다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section 1.1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리고(and)”로 이어 나열할 것을 제안하였다.

CCFL는 생명공학기술응용식품에 관한 정부간 특별작업반 회의와 FAO/WHO 식물성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협의회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관성있도록 하기 위해 “existing food and ingredients”를 “conventional counterpart”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이태리는 표시시행대상을 최종소비자를 위한 식품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통식품전체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CCFL은 현재 본 지침서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하여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CCFL는 세가지 표시시행방식이 더 검토될 여지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표시방식간에 “and/or” 문구를 그대로 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section 1.1을 세가지로 세분하자는(1.1.1, 1.1.2 및 1.1.3) 노르웨이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캐나다와 미국은 생산방법을 나타내는 표시시행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square bracket으로 묶여있는 현행 section 1.1.2을 그대로 둘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는 본 지침서 초안의 준수/시행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CCFL은 현 단계에서 이 section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CCFL는 시간관계상 본 지침서를 더 검토할수 없었고 본 회의에서 수정된 사항대로 다시 3단계로 하여 의견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작업단의 참여범위를 모든 회원국과 국제기구로 확대하고 캐나다에서 주재하여 내년 회의전까지 문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자메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타로, CCFL는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 제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들어있지 않다고 표시하는 강조표시(Negative Claim)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검토하지 못했고 내년회의에서 본 지침서(안)과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4. 건강강조표시 관련

CCFL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지침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28차(2000년)회의에서 건강강조표시 지침안을 별도로 하지 말고 기존의 영양강조표시 지침서

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여 “건강 및 영양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서”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쟁점사항은 section 2에서 건강강조표시를 2.2.1 영양소기능 표시(Nutrient Function Claims), 2.2.2 향상된 기능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s), 2.2.3 질병위험성감소관련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로 구분하는 것인데, 이 작업은 건강강조표시 Working Group을 따로 마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본 회의에서 확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Working Group의 의장은 Working Group^o 수정한 안과 토론판례문을(CRD 48) 보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본 지침서의 제목을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대한 지침서 초안(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the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으로 바꾸고, 이에 맞게 문서전체를 수정하였다. (2) 소비자교육에 대한 조항을 건강강조표시의 조건인 Section 7으로 옮기지 말고 서문에 그대로 두도록 함. (3) 영유아용 조제유 및 식품에는 건강강조표시를 하지 않도록 함.

Working Group에서 영양소기능강조표시를 영양강조표시가 아니라 건강강조표시에 넣을 것인지에 대하여 많이 논의가 있었다. 또한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disease risk reduction claims)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였다.

어떤 국가는 대중의 건강의 관점에서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에 다른 국가는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를 구체화할만한 충분한 과학적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우

려를 나타내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질병위험감소란 질병예방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section 3.4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Working Group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측면에서 강조표시에 대한 일반규격(CAC/GL 1-1979 (Rev.1-1991)의 section 3.4을 개정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총 식이관점에서 현재 검토중인 건강강조표시의 유형을 구분화하고 그 의도를 전달하는데 강조표시의 예시가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여러 가지 영양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의 유형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소규모 작업단(캐나다, 독일, 스위스, CIAA)에서 스웨덴이 제출한 강조표시의 예시를 검토하였하였고, 향후 건강강조표시의 적절한 예시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같은 Working Group의 발표에 대해, CCFL은 당 지침서 끝부분에 건강강조표시의 예시를 표로 만들어 삽입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을 수락하고 또한 본 지침서의 다른 section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강조표시 예시도 이 표에 같이 묶어 삽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지침서에 그러한 예시를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러한 예시들이 결정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예시의 의미에 무게가 실릴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예시를 나열한 것도 아니며, section 7.1에서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조건을 이미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광고에도 section

7.1부터 7.4(건강강조표시의 조건)까지의 조항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것이 CCFL의 업무분장에서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Working Group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광고에도 같이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내년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CCFL은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 위원회와 같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설정한 코덱스 규격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건강강조표시는 영유아식에는 허용할수 없다는 규정을 Section 1(적용 범위)에 삽입하기로 하였다.

인디아는 건강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 건강과 식이섭취간의 상관관계가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성립되어야 하며 각 섭취집단마다 serving size 와 섭취방법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으므로 해당 section 을 삭제해야 하며, 영유아용식품에는 비교강조표시와 건강강조표시를 금지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몇몇 국가는 section 2.2.3(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이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델란드는 ‘질병발생위험요소감소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Factor Claims)’로 하자로 제안하며 이 강조표시를 뒷받침할 과학적 결과를 입수하기 쉽다는 면에서 이것이 더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이 제안을 지지하였고 실제로 자국내에서 질병의 위험요소를 감소한다는 강조표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였다.

남아프리카와 ICGMA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문에 자국내 보건정책(national health policy)라고 명시한 것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CCFL은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에 관하여,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연구자가 대상식품중의 특정 성분의 상관성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 식품군을 대상으로 하여 식이섭취와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면” 식이섭취와 건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정보와 그러한 상관관계를 이루는 식품의 조성관련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몇몇 국가는 질병발생위험감소강조표시가 강조표시 일반규격(CAC/GL 1-1979 (Rev. 1-1991))의 section 3.4에 위배되는지 논의하였고 강조표시 일반규격과 건강강조표시간의 관계를 더 검토하자고 하였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향상된 기능성 강조표시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인 section 2.2.2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논의결과에 대하여 CCFL은 본 지침서 초안이 더 검토되어야 하므로 3단계로 되돌려 의견을 요청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5.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 관련

28차 회의에서 유기축산가공품에 대한 지침안(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를 8단계로 상정하면서 별의 생산규정과 유기축산가공식품에 첨가하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에 대한 규정은 더 검토하기 위해서 6단계로 되돌린바 있다. 이번회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꿀벌과 첨가물 조항 : 양봉(Bee-keeping)

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생산식품 Working Group은 모든 CODEX 회원국이 자국내 조건에 맞게 양봉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CODEX 지침서의 규정이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유기양봉생산은 동 지침서에서 규정한 유기식품생산원칙을 준수하여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꿀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합의된 규정과 일관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항의 제목을 바꾸기로 하였다. 즉 동 조항의 제목을 '양봉과 꿀벌생산품(Beekeeping and bee products)'으로 하기로 하고 Working Group에서는 동 조항에 다음의 내용을 삽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일반원칙, 전환, 꿀벌의 기원, 봉상의 위치, 꿀벌의 건강상태, 봉상관리, 관련기록보관이었다.

동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유기양봉과 유기꿀벌생산품에 대한 신뢰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꿀벌은 수분받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환경에 대한 건강의 지표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나 유기적 규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장소에서 생산된 꿀벌생산품을 유기식품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

다. 이런 면에서 종래의 농약사용지역이나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Working Group은 꿀벌이 유기식품 생산조건에 맞지 않는 지역에 날아가지 않도록 꿀벌에 충분한 먹이공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휴면기간동안 봉상에 먹이가 적당히 공급되도록 봉상을 잘 관리하도록 하였다. 벌떼에 먹이를 공급하는 특정규정은 먹이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참작하여 간단하게 작성하였다.

동 개정안에서 꿀벌과 봉상의 건강상태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한 조치는 자국내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봉상의 이동의 위치파악등을 기록한 상세히 기록한 기록물들이 보관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봉과 꿀벌생산품의 개정안을 마무리하면서, CCFL은 작년에 합의한 8단계 문서중의 Annex 3 '검사 혹은 인증시스템에 따라 최소한의 검사규정 및 예비조치(Minimum inspection requirements and precautionary measures under the inspection or certification system)' 중 5항 및 7항의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다. CCFL은 Working Group이 제안한 양봉규정 개정안에 동의하며 8단계로 상정하였다.

(2) 유기축산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CCFL은 유기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Working group에서 토론중에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가능한 제한해야 하며 이렇게 제한하면 식품업체가 동 지침서를 준수하기 위해 혁신적인 생산기술을 간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다른 국가는 소비자들은 종래의 방식이나 유기원료로부터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식품의 특질은 식품이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유기원료로부터 만들어진 전통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CCMMMP와 같은 코덱스분과위원회에서 설정한 규격에 허용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들도 그에 상대되는 유기식품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orking Group에서 주로 우려하는 점으로 나타난 것은 유기축산가공식품 중에 착색료, 착향료, 질산염 및 아질산염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의 기능이나 유기강조표시가 부착된 식품에 그러한 전통적인 물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지침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동 지침서(CAC/GL 32-1999)의 Section 5에서 규정한 식품의 조리 및 보존시에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Table 3과 4에 해당 부분에 삽입될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의 일부 목록만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목록이 제한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각국에서 자국의 소비자의 기대상황에 맞게 식품첨가물 목록을 따로 규정할수 있도록 Table 모두에 주석을 달기로 하였다. CCFL은 이러한 방식에 합의하

고 수정된 안을 8단계로 상정하였다.

(3) Table 1 : 토양비료 및 조절제로 사용되는 물질

CCFL은 지난 28차 회의에서 말레이시아는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 지침서'의 Table 1의 토양비료 및 조절제로 사용되는 물질에 oil palm cocoa와 coconut의 부산물을 추가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CCFL은 이러한 추가요청이 한정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급행수순으로 상정하여 47차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하였다.

Working Group은 접수받은 의견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한 물질을 토양비료제 및 조절제 목록에 추가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Working Group에 참여한 많은 국가에서 동 지침서의 Section 5에서 규정한 대로 유기적 생산시스템에 허용되는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제안한 부산물에 합성첨가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 유기적 생산시스템에 어떤 물질을 선택하여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Working Group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유기식품생산업체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각 업체의 발전과 식물성원료의 재활용 양자를 독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Working Group은 palm과 cocoa 산업체의 부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합성첨가물을 함유하는 원료를 재활용하기 전에 적당히 퇴비화한다면, 동 원료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CFL은 사탕수수와 설탕의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도 넣어달라는 멕시코의 제안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들 물질은 이미 Annex 2의 Table 1(설탕업체의 부산물과 식물성잔여퇴비물)에서 토양비료 및 조절제로 허용하고 있는 물질이라 설명하여 추가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같은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CCFL은 동 지침서 개정초안(토양비료제 및 조절제로 사용되는 물질, Annex 2, Table 1)을 급행수순 5단계로 하여 24차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4) 유기농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 지침서 검토

Working Group에서는 CCFL에 동 지침서의 Annex 2에 나열된 물질에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각 나라에서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 지침서를 검토하는 과정은 CAC/GL 32-1999의 Section 8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CCFL은 유기식품생산업체의 기술적 진보결과, 동 물질의 목록은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CCFL은 향후에 추가되는 물질을 결정하는데 기술적인 자료에 근거 해서 추진되도록 동 지침서의 Section 5에서 규정한 물질추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기준검토를 통해 향후 유기농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작업과 Annex 2를 개정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CCFL은 총회에 신규작업으로 동 지침서의 Section 5와 Annex 2의 개정작업 추진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회의 승인이 있을 시, 개정부분에 대한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공람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회의전에 3단계에서 공람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이 완성되면 2003년 25차 총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CODEX 규격 중 표시규정 검토

식품별 분과위원회에서 식품규격을 설정할 때 표시규정은 CCFL에 회부하여 검토받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는 9개의 식품규격에 대한 규격을 검토하였다.

코코아 제품 및 초콜릿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COCOA PRODUCTS AND CHOCOLATE)의 Cocoa Butter에 대한 규격 개정안 및 Cocoa(Cacao) Mass (Cocoa/Chocolate Liquor) 및 Cocoa Cake에 대한 규격 개정안과, 천연광천수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NATURAL MINERAL WATERS)의 천연광천수 이외의 병/포장 식수에 대한 규격초안 (Bottled/Packaged Drinking Waters (Other than Natural Mineral Waters)), 스프 및 브로스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SOUPS AND BROTHS)의 Bouillons 및 Consommés 규격안, 식물성단백질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VEGETABLE PROTEINS)의 Wheat Protein Products including Wheat Gluten 규격안중의 표시규정을 원안대로 승인

하고 나머지 규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다.

(1) 가공과채류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의 Canned Applesauce에 대한 규격 개정안

비소매용 용기표시(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rs) 조항에 관하여, 인디아는 현재의 규정에 수입업자의 표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제품검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CCFL은 비소매용 용기표시 조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해당부분을 “제조업자, 포장업자, 판매업자 및/또는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로 하기로 하였다.

CCFL은 본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한 모든 식품규격을 위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며 향후 각 분과위원회에서 식품규격 중의 표시규정을 검토할때에 이같은 결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나머지는 표시규정은 원안대로 승인하며, 단 applesauce에 대한 프랑스어의 올바른 번역은 “purée de pommes”이라 밝혔다.

(2) Canned Pears에 대한 규격 개정안

CCFL은 7.2.2항 끝에 ‘배의 껌질을 벗기지 않은 경우에 이를 표시함’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CCFL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 규격의 스페인어 번역판의 해당부분을 다음으

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영어판)

‘Stemmed’ or ‘Unstemmed’
‘Dice’ or ‘Diced’ or ‘Cubes’
‘Pieces’ or ‘Irregular pieces’

(스페인어판)

‘con cabo’, ‘en cabo’
‘cubos’, ‘cubeteado’ o ‘en cubos’
‘trozos’ o ‘trozos irregulares’

3) Cocoa Powders (Cocoas) 및 Dry Mixtures of Cocoa 및 Sugars에 대한 규격 개정안

CCFL는 표시규정을 승인하고 다른 코코아제품규격과 일관성 있도록 ‘비소매용 용기표시(Labelling of Non-Retail Containes)’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4) 어류 및 어류제품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ISH AND FISHERY PRODUCTS)의 Marine and Freshwater Fish, Crustacean and Molluscan Shell-fish에 규격 안

CCFL는 본 규격의 해당 표시규정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CCFDP의 차기회의에서 표시규정을 포함하여 Dried Salted Anchovies의 규격안을 더 검토하도록 하며 본 규격최종안이 작성된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인디아는 8.3항(Date Marking)의 ‘해당 월 말일(the end of the month)’ 대신에 ‘해당 년도의 말일(the end of the year)’로 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CCFL는 이 규정은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General Standard for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에 따른 것으로 그 규격에서(section 4.7 Date

Marking and Storage Instructions) 최소보존기간을 표시할 때 해당 월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월이 12월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을 표시해도 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7. 영양표시 지침서 관련

28차 회의에서 기존의 영양소외에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 가운데 한가지 이상에 대해 영양강조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류, 섬유소,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을 표시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3단계로 재회부되었다.

멕시코는 영양표시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그러기 위해서 section 3.2.2.(부가적 영양표시)를 삭제하고 새로운 section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영국은 소비자가 정보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려면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강조표시를 할 때 영양표시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국가와 Consumers International은 영국의 제안에 찬성하므로 CCFL은 이에 맞게 section 3.2.2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EC를 대표하여 스웨덴은 문서로 제출한 의견을 설명하며, 콜레스테롤에 대한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화정도를 같이 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section 3.2.4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section 3.2.1.2에서 표시해야하는 항목에 식이섬유를 추가해야 하며, section 3.2에 식이섬유에 대

한 규정은 그대로 두어야 하며, section 3.2.4에서 지방산 함량을 표시할 때 mono- 및 polysaturated fatty acids와 콜레스테롤도 표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많은 국가와 CI 및 IBFAN은 square brackets를 없애고 section 3.2.2(부가적 영양표시)를 현안대로 하자고 제안하며, section 3.2.3 맨 마지막의 식이섬유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며, section 3.2.2 및 3.2.4에 trans fatty acids의 함량표시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WSRO는 당류표시는 현재 과학적 증거로 입증할 수 없어 '코덱스 의사결정시 과학의 역할과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범위 원칙'의 첫 번째 문장(규정집 참조, 모든 코덱스규격은 과학적인 증거에 따라야 함)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section 3.2.2와 3.2.3에서 당류표시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IAA는 동 지침서의 내용을 지지하며, 영양소함량표시는 임의로 표시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영양소를 강조표시할 경우에만 하자고 하였다.

많은 의견교환 끝에 CCFL은 square bracket으로 둑여있는 section 3.2.2, section 3.2.3의 마지막문장, section 3.2.4의 마지막문장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section 3.2.2와 3.2.4에 trans fatty acids 표시항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section 3.2.4(지방산표시)에서 규정한 콜레스테롤은 square bracket를 없애기로 하였다.

CCFL은 캐나다, 덴마크, 일본 및 미국과 IACFO은 강조표시를 한 경우에 영양표시를 강제로 규정할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였다.

CCFL은 본 회의에서 개정된 개정초

안에 대한 더 많은 의견 및 논의를 위해 다시 3단계로 회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8.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안(분류명)

동 것은 “유단백제품(milk protein products)”과 “유단백(milk protein)”중에서 분류명의 정의를 어떤 것으로 할것인지 합의되지 못하여 6단계로 되돌려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기술적 진보로 인해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유단백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므로 표시시행의 목적과 소비자의 정보를 통해서 동 제품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하며, CCMMMP에서는 유단백을 최소한 35% 이상 함유하는 것은 “유단백제품”으로 50%함유하는 제품은 “유단백”으로 제품명을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다.

몇몇 국가는 CCMMMP가 제시한 안을 지지하였으나, 다른 국가는 분류명을 유단백제품(35% 기준)으로만 하자고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받아 인디아는 최소 30%이상 유단백을 함유한 것을 기준으로 유단백제품이라는 분류명 하나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다른 국가는 “유단백제품”的 최소 단백질함량은 35%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C를 대표한 스웨덴과 스위스는 분류명을 “유단백” 하나로 하고 이 경우 유단백함량이 매우 높은(예를 들어 50%) 원료에만 사용하자고 하였다. “유단백제품”이라는 분류명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장은 작년 회의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분류명에 대한 정의에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6단계로 하고 내년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9.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개정초안 (성분함량표시)

CCFL은 28차 회의에서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 중 section 5.1(성분함량표시, 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 QUID)을 개정하는 작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47차 집행이사회에서 이 새로운 작업의 추진을 승인하였다.

IACFO는 CCFL에 개정안(CRD 33)을 제출하며 표시를 오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어, QUID 표시는 소비자를 위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는 제품의 품질과 건강관련 특성의 면에서 소비자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다성분을 함유한 모든 식품의 표시에 있어 성분목록에 각 주성분(흔합성분의 성분까지 포함)의 함량을 무게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CI는 이 제안을 찬성하였다.

태국은 IACFO에서 제안한 표시규정에 대해서 부연설명하면서, 태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QUID에 강제표시규정은 주성분의 개략적인 함량을 비율이 아닌 퍼센트로 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주성분이란 식품의 성분의 가장 주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와 참관인은 QUID 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표시할 한계치(thresholds)를 정하는데는 신중한 검토

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C를 대표하여 스웨덴은 QUID 표시원칙에 지지하지만 어떤 퍼센트함량 이상 존재하는 성분의 양을 (원칙에 따라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심했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어떤 성분을 그림이나 글자로 강조한 경우에만 그 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모든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때문에 동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디아는 성분함량표시를 규정해야하게 되면 제품개발이 위축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일부 국가는 QUID표시는 임의표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과 관련 지침서에서 이미 많은 정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인 성분함량표시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칠레는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격에 찬성하지만 함량표시(quantitative declaration)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CCFL은 동 전에 대해 국가간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CL 2000/35-FL과 CRD 33에서 제안한 대안을 3단계에서 공람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이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의 section 7.3을 신설하여 임의표시관련 안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10. 원산지표시관련

원산지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많은 국가에서 현재 자국내에서의 원산지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28차 회의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작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영국의 제안을 검토한바 있다. CCFL은 29차 회의에서 자세히 검토할수 있도록 영국이 자세한 토론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스위스, 말레이시아와 협력하여 작성한 토론보고서를 제시하고 현행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의 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문서에서 식품과 원료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원산지표시를 위해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나열하여 부가적 표시규정이 실질적으로 내포하는 의미를 다루었으며 이에 따라 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격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많은 국가와 참관인은 현행 규격에 원산지표시규정을 개정작업하겠다는 영국의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와 참관인은 원료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규정해야 하는 정당성,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국제무역의 문제발생가능성점을 문제삼았다. 동 전과 관련하여 미국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내의 협의단의 작업결과를 WTO에서 논의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ICGMA는 원산지표시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 정당성등을 문제삼은 것에 찬성하며 현행 규격 section 4.5.1과 4.5.2

에서 원산지표시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CCFL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식품표시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현행 규격을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CCFL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현행 조항의

개정작업을 새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영국은 스위스, 말레이시아등 관심있는 국가의 협조를 받아 현 토론보고서에 근거하여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3단계에서 공람하여 내년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